

#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Japan Non Tariff Barriers Issue

## 일본, 식용 껍질 신선란 수입 검역 요령 개정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 발표

2024년 10월 1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食用生鮮殻付卵の輸入検疫要領)」을 개정하여 발표함. 이 개정안은 수입되는 신선란이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 가금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함**

1. 대상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칠면조 등 가금류와 오리, 거위 그 밖의 기러기목의 조류의 알로서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서 수입되는 껍질이 있는 신선란(이하 '식용 껍질 신선란')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입 조건

구분	내용
생산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일본용 가금류 등의 수출과 관련된 가축 위생조건에서 지역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은 생산 농장 및 식용 껍질 신선란의 집하, 세정, 소독, 선별, 포장 등을 하는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은 해당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출 전 90일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을 것</li> <li>단, 별도로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으로부터 통지가 있었던 국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으로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 껍질 신선란의 생산지(생산 농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km 내의 지역)에는 해당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출 전 90일간 뉴캐슬병의 발생이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 껍질 신선란의 생산농장에는 수출 전 90일간, 가금 콜레라 및 기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을 것</li> </ul>

구분	내용
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은 위생적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함</li> <li>• 계란은 불순물이 없고, <b>200ppm의 유효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되어야 함</b></li> <li>• 단,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반경 50km 이내의 지역)에 해당 식용 껍질 신선란의 <u>수출 전 90일간 뉴캐슬병의 발생이 없고, 생산지에서 시설까지의 수송이 방역상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증명으로 해당 소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u></li> <li>• 식용 껍질 신선란의 용기,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일 것</li> </ul>
운송 및 보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 및 보관되어야 함</li> </ul>
검사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1), (2) 및 (3)에 대해서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이 필요함</li> </ul>

## 2) 수입 검사

- 가축방역관은 수입항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상기 1) 수입조건을 만족하고,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함

### 일본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 기업, 한국산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한국은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열처리한 가금육, 삼계탕과 유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돈육 및 가금육은 수출 중단된 상태이며, 신선란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일본으로 육류와 가금류, 관련 가공제품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 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 검역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식품 판매 목적의 수입이 금지됨.** 또한, 위생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하고,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필수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 위생증명서 신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전자 민원 신청](#)
- ▶ 축산물 수출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확인

## 출처

動物検疫所, 食用生鮮殻付卵の輸入検疫要領, 2024.10.10